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제4조)
-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커졌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득이한 대면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21년 8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2개 자치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2021.5.18. 제정, 2021.11.19. 시행)을 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과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였음.

이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 시행) 제9조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부합됨.

○ 검토 결과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 업종 지정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위원회 구성 등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63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제4조)
- 다.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 라.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7. 16. ~ 7. 2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도 구민의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보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구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